

대학발전협의회 규정

제1조(목적과 명칭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및 예원예술대학교 기본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제안을 목적으로 대학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라 한다.

제2조(기능 및 업무관장) ①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 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·심의 및 제안
2.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·신청에 관한 심의·제안
3. 기타 주요정책 개발 및 제안

② 위원회 관련 업무는 법인사무국에서 담당하고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예원예술대학교 각 대학원장, 각부서 처장, 산학협력단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겸임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임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위원에게 업무를 부여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이 부여하는 업무에 대하여 연구·개발·자문 및 심의·의결한다.

③ 법인사무국은 협의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재정)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교통비, 출장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0. 12. 2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7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